

식품 분야 Risk Assessment의 용어 통일을 위한 검토

On Consistent Use of Terminologies in Food Risk Assessment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isk Assessment는 현재 7개 소관부처의 14개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 현행 법에서 보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 위험성은 위해요소(Hazard), 공산품 등의 위험은 위험(Danger), 위험물, 위험평가로 사용하고 있다. Codex의 정의를 보면 Risk란 A function of probability of an adverse health effect and the severity of that effect, consequential to a hazard(s) in food으로 식품중의 위해요소에 의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개연성과 그 영향의 심각성과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도 이와 다르지 않아 식품과 건강의 의미가 포함된 용어는 위험(danger, harm)보다 위해(hazard)가 옳바르다. Codex 정의처럼 식품중의 위해요소에 의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Risk Assessment이므로 위해를 갖고 있는 성질인 위해성평가나 거듭되는 회수나 정도의 확실적인 의미인 위해도평가보다 어차피 Risk Assessment가 위해요인(Hazard)은 물론 사람에게 미치는 건강영향까지 분석하는 작업이니 사족적인 ~도, ~성을 삭제한 위해평가가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특히 식품에 관련되는 외국 용어가 번역, 사용되는 과정에서 통일된 용어가 없이 각 부처마다 달리 사용하고 있어 국민, 업계, 전문가 상호간에 혼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광우병을 BSE, 소뇌해면증으로 조류독감과 AI, 그리고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변형식품, GMO 식품 등 동일한 뜻의 용어가 사용자의 다양한 입장에서 혼용되고 있어 사회혼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국민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불신, 불안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Risk Assessment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고자 각 용어의 국제적 정의, 사전적 정의 및 의미,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의미, 과학적 근거, 그리고 국민의 의견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용현황 및 문제점

1) 관련법 사용현황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Risk Assessment라는 용어를 현재 보건복지부 등 7개 소관부처

의 14개 관계 법률에서 용어(위험,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중 「식품안전기본법」 등 2개의 법률은 법 제정시에 이미 Risk Assessment 용어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12개의 법률에서 법 개정시에 Risk Assessment라는 용어를 포함시켜 현재까

지 사용하고 있다. 14개 법률 중 Risk Assessment에 대한 용어 정의가 되어있는 법률은 「식품위생법」 등 6개 법률이고, 나머지 8개 법률에는 정의가 규정되어있지 않고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

표 1. 국내법상 사용 현황

소관부서	법률명	법조항	내용	용어정의 규정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등	유해인자의 관리	없음
국토해양부	개항질서법	제2조	위험물 정의	위험물 (제2조 제8호)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 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조	위해행위방지 (법의목적)	없음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위험물 정의	위험물 (제2조 제1호)
보건복지부	식품안전기본법	제20조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의무화	위해성평가 (제2조 제6호)
	식품위생법	제15조 위해평가	위해사고의 즉각적인 대응	위해 (제2조 제6호)
지식경제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	제13조 위해성심사	위해성 심사	없음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8조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위해성 (제2조 제10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 위험평가	위험평가	유해물질 (제2조 제13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위해물 (제2조 제14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위해평가	위해평가	없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수입금지	수입위험분석	없음
	식물방역법	제6조 병해충위험분석	병해충위험분석	없음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37조 수입위험분석	수산물의 수입에 관한 분석·평가	없음

3. 법령별 세부현황

1) 노동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의 사용

- 법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등) ③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 위험성^{1) 2)}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포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

(1) 개항질서법에서 위험의 사용

-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위험물”이란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선박이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위험의 사용

- 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운항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행정안전부

(1)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의 사용

- 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4) 보건복지부

(1) 식품안전기본법에서의 위해성평가 사용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위해성평가”란 식품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20조(위해성평가)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

1) 위험(危險, danger)이란 잠재적 손실이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나 조건을 위험이라 하는데, 산업현장에는 수많은 위험이 있다. 건물의 붕괴나 화재, 건물 내에서 미끄러지거나 추락, 기계나 설비에 의한 협착, 실내공기 오염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선, 유해광선, 소음 진동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 기계적 또는 비 기계적 위험이 있다(산업안전보건용어사전, 한국산업안전공단, 2006).

2) 위험성이란 어떤 기회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또 건축물, 설비 등에 손상을 주는 원인이 되는 잠재적인 위험성이나 유해성을 말하는데, 이들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상해나 손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에 따라 위험성 평가기법의 다양한 적용이 필요하다.

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식품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해지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의심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규정에 의한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식품위생법에서 위해평가의 사용³⁾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 법 제15조(위해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위험평가의 사용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능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법 제14조의6(농산물의 위험평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 안전 관련 기관에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우수·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농림수산식품부

(1)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위해평가의 사용

- 법 제33조의2(위해평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확실히 정

(3)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위해의 사용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3) 식품위생법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위해물”이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금속·방사능·항생물질·병원성미생물 및 유독성물질 등을 말한다.

(4)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위험의 사용

- 법 제32조(수입금지)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식물검역법에서 위험의 사용

-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평가이하 “병해충위험분석”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6)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서 위험의 사용

- 법 제37조 (수입위험분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과적인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수산동물 및 수중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

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수산동물의 수입에 관한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위험분석”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6) 지식경제부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서 위해성 심사의 사용

- 법 제13조(위해성 심사 절차 및 대행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를 하는 경우에 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법 제15조(위해성이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체) ①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그 품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7) 환경부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해성평가의 사용

-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위해성(위해성)”이란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법 제18조 (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4. 용어 해석

1) 국제기구 및 외국의 사용현황

(1) Codex 정의

- Risk: A function of probability of an adverse health effect and the severity of that effect, consequential to a hazard(s) in food
- Risk Assessment: A scientifically based process consisting of following steps: (i) hazard identification, (ii) hazard characterization, (iii) exposure assessment, and (iv) risk characterization.
- Hazard : A biological, chemical or physical agent in, or condition of, food with the potential to cause an adverse health effect

(2) OIE 정의

- Risk: means the likelihood of the occurrence and the likely magnitude of the biologic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an adverse event or effect to animal or human health

- Risk Assessment: means the evaluation of the likelihood and the biologic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entry, establishment and spread of a hazard within the territory of an importing country
 - ※ Import Risk Analysis: to provide importing countries with an objective and defensible method of assessing the disease risks associated with the importation of animals, animal products, animal genetic material, feedstuffs, biological products and pathological material

(3) IPPC 정의

- pest risk Assessment(for quarantine pests): Evaluation of the probability of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a pest and the magnitude of the associated potential economic consequences
- pest risk Assessment(for regulated non-quarantine pests): Evaluation of the probability that a pest in plants for planting affects the intended use of those plants with an economically unacceptable impact
 - ※ pest Risk Analysis : The process of evaluating biological or other scientific and economic evidence to determine whether an organism is a pest, whether it should be regulated, and the strength of

any phytosanitary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it

(4) OECD 정의

○ Risk Assessment: A systematic process for assessing and untegrating professional judgements about probable adverse conditions and/or events. The risk assessment process should provide means of organising and integrating professional judgements for development of the work schedule

(5) 일본

일본의 행정부처인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및 내각부는 Risk Assessment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리스크평가로 번역하여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6) 중국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의거하여 Risk Assessment를 위험평가로 사용하고 있다. 법 제11조 국가는 식품안전위험검사제도를 구축하고 식원성질병·식품오염 및 식품중의 유해요소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국가의 식품안전위험검사계획을 제정·실시한다.

법 제13조 국가는 식품안전위험평가제도를 수립하고 식품·식품첨가제중의 생물성·화학적·물리성 위해에 대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위험평가업무의 조직을 담당하며 의학·농업·식품·영양 등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안전위험평가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안전위험평가를 실시한다. 농약·비료·생장조절제·동물의약품·사료·사료첨가제 등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마땅히 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가위원회의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한다.

식품안전위험평가는 마땅히 과학적인 방법을 운용하고 식품안전위험감측정보·과학데이터 및 기타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표 2. 일본 정부의 용어사용 현황

용어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내각부
Hazard	위해요인	위해요인	위해요인
risk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risk assessment	리스크 평가	리스크 평가	리스크 평가

자료: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리스크관리의 표준절차서, 일본의 식품안전용어집, 2010.
http://www.maff.go.jp/j/syouan/seisaku/risk_analysis/sop/pdf,
http://www.maff.go.jp/j/syouan/seisaku/risk_tejunsyo.pdf

(7) 기타 국제기구 및 외국

<표 3>에는 Hazard와 Risk에 대해 FAO와 유럽연합, 호주뉴질랜드의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Risk는 확률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이 Hazard와 다른 결정적 요인이라 하겠다.

2) 사전적 정의

국어사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백과사전, 영어사전(두산동아 prime 영한사전,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및 한자사전과 농업사전 등을 참고하여 용어의 정의를 고찰하였다.

(1) 국어 및 한자사전의 정의

위험 (危險)

- 국어사전: [명사] 해로움,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음. 또는 그런 상태
- 한자사전: ①실패(失敗)하거나 목숨을 다치게 할 만함 ②안전(安全)하지 못함

위해 (危害)

- 국어사전: [명사] 위험한 재해
- 한자사전: 위험(危險)한 재해(災害), 특히, 사람의 생명(生命)을 위협(威脅)하는 위험(危險)이나 해(害)

표 3. 기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의

출처	Hazard	Risk
FAO(1995) ²⁾	Chemical or physical agent or property that may cause a food to be unsafe for human consumption, or a defect generally considered objectionable.	A function of the probability of an adverse event and the magnitude of that event, consequential to a hazard(s) in food.
Aus/NZ Standard ³⁾	A source of potential harm or a situation with a potential to cause loss.	The chance of something happening that will have an impact upon objectives. It is measured in terms of consequences and likelihood.
EU(2000) ¹⁾	The potential of a risk source to cause an adverse effect(s)/ event(s).	The probability and severity of an adverse effect/event occurring to man or the environment following exposure, under defined conditions, to a risk source(s).

자료: 1) Christensen, F.M., Andersen, O., Duijm, N.J. & Harremoes, P. (2003): Risk terminology – a platform for common understanding and better communication,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103(3), 181~203.
 2) IPCS (2004): Risk assessment terminology – Part 1 and Part 2.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3) IRGC (2005): Risk governance – Towards an integrative approach (White Paper No. 1). Geneva:International Risk Governance Council. Annex B – An Overview of Risk Terminology (by Terms).

유해 (有害)

- 국어사전: [명사] {주로 일부 명사 앞에 쓰여} 해로움이 있음.
- 한자사전: 해가 있음. 해로움

~도 (度)

- 국어사전: [명사] 1. 어떠한 정도나 한도/ 2 거듭되는 횟수.
- 한자사전: ①한도(限度) 또는 정도(程度) ②거듭되는 회수 ③제도(濟度) ④득도(得道) ⑤각도의 단위(單位). 직각(直角)의 90분의 1 ⑥경도(經度) · 위도(緯度)의 단위(單位). 곧 지구(地球) 둘레의 360분의 1 ⑦온도(溫度)의 단위(單位). 온도계(溫度計)의 눈금의 하나 ⑧(문체(文體)에 쓰이어)번 ⑨안경(眼鏡)의 강약을 나타내는 단위(單位) ⑩경도(硬度) · 비중(比重) · 농도(濃度) 같은 것의 단위(單位) ⑪(어떤 해를 나타내는 이름 밑에 붙어서)그 해의 연도(年度)를 가리키는 말 ⑫한도(限度)나 정도(程度)를 나타내는 말

~성 (性)

- 국어사전: [명사]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본성이나 본바탕.
- 한자사전: ①(사람이나 사물(事物) 따위의) 본 바탕 ②만유(萬有)의 본체 ③남성(男性)과 여성(女性) 또는 암컷과 수컷의 구별(區別) ④인도(印度) · 유럽 어(語)에서 명사(名詞) · 대명사(代名詞) 따위의 문법(文法)상(上) 성질(性質)의 하나

(2) 영어 사전

- risk
 - the chance or possibility of suffering loss, injury, damage, etc; danger.
- risk assessment
 - 1. The overall process of identifying all the risks to and from an activity and assessing the potential impact of each risk.
 - 2. The determination of the potential impact of an individual risk by measuring or otherwise assessing both the likelihood that it will occur and the impact if it should occur, and then combining the result according to an agreed rule to give a single measure of potential impact.
- danger
 - Danger is the possibility that someone may be harmed or killed.
- hazard
 - A hazard is something which could be dangerous to you, your health or safety, or your plans or reputation

(3) 식품과학용어사전

- 식품과학용어사전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에 의하여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발생하는 확률과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일이라고 해석이 되었으며 위해분석의 3대 요소의 하나로 화

학물질이나 미생물 등의 요인별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상태에 따라 평가한다로 규정되어있다.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 [농림수산성 및 후생노동성(일본), 2005: 식품안전성에 관한 리스크 관리 표준절차서(용어정의)]

(4) 식약청 위해분석 용어해설집(2009.05)

○ 위해평가(risk assessment)란 위해요소에 인체가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알려진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에 대한 과학적 평가. 위해평가 절차는 위험성 확인, 노출평가, 위험성결정(용량-반응), 위해도 결정으로 구분된다.

- [US FDA/CFSAN, 2002-Initiation and conduct of all ‘major’ risk assessment within a risk analysis framework(glossary)]

○ “위해평가”라 함은 식품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규명된 노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해영향과 발생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위해도 결정 등 일련의 단계를 말한다.

- [식약청 고시(위해평가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 제2007-87호) 용어의 정의]

○ 식품속에 함유된 위해요인을 섭취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확률로 어느 정도 건강에

5. 의견조사 결과

지자체 공무원 25명과 일반국민 68명을 대상으로 Risk Assessment에 대해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80.6%가 Risk Assessment에 대해 인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반국민보다는 공무원의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식품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Risk”의 통일된 용어로는 위험보다는 위해가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80.6%로 높게 나타났다.

위험보다는 위해가 바람직하다는 <표 5>의 결론에 덧붙여 위해, 위해성, 위해도중 어떤 용어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55.9%가 위해가 적당하는 조사결과를 얻었다. 애당초 “Risk”에 노출되는 확률개념이 포

표 4. 위험평가 및 위해평가(Risk Assessment)의 인지경험

(단위: 명, %)

구 분	합 계	있 음	없 음
합계	93 (100.0)	75 (80.6)	18 (19.4)
일반국민	68 (100.0)	53 (77.9)	15 (22.1)
공무원	25 (100.0)	22 (88.0)	3 (12.0)

표 5. “위험”과 “위해”로 혼용되고 있는 “Risk” 용어의 올바른 통일 방향

(단위: 명, %)

구 분	합 계	위 험	위 해
합계	93 (100.0)	18 (19.4)	75 (80.6)
일반국민	68 (100.0)	15 (22.1)	53 (77.9)
공무원	25 (100.0)	3 (12.0)	22 (88.0)

표 6. “위해성, 위해도, 위해”로 혼용되고 있는 용어의 올바른 통일방안

(단위: 명, %)

구 분	합 계	위해성	위해도	위 해
합계	93 (100.0)	25 (26.9)	16 (17.2)	52 (55.9)
일반국민	68 (100.0)	19 (27.9)	15 (22.1)	34 (50.0)
공무원	25 (100.0)	6 (24.0)	1 (4.0)	18 (72.0)

함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올바른 조사결과로 판단되었다.

6. 검토의견

1) 식품안전과 관련된 “Risk Assessment”는 “위해평가”로 통일함이 바람직하다.

식품 안전과 관련한 Risk Assessment는 인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 중의 위해요소(Hazard)를 과학적 근거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Codex 및 각 국가의 규정에서 식품에 대한 Risk Assessment는 위해요소(Hazard)의 확인, 확정, 노출평가 및 위해결정의 단계로 구성하여 규정하고 있다.

산업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위험(Danger)”은 잠재적 손상이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나

조건의 개념으로 식품 안전 분야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식품분야에서 사용되는 “Risk”라 함은 식품 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Hazard)가 인체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률과의 관계를 말함으로 “Risk Assessment”는 “위해평가”로 통일함이 바람직하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사용하는 “농산물 위험평가”의 경우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해물질(위해요인)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임으로 “위해평가”로 개정하여 사용함이 적절하다.

2) 노동부, 국토해양부의 관련 법에서 위험 및 위험물로 사용하는 “위험”은 화재, 폭발 등의 위험(Danger)이 있거나 인체건강 또는 환경에 해(Harm)를 끼치는 것을 모두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기법을 적용하고 있어

관련 법에서 위험이란 용어는 그대로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환경부의 관련 법에서 “위해”는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를 말하고 있어 용어정의를 고려할 때 위험(Danger)보다는 유해물질(위해요소)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어 그대로 사용함이 무방하다.

3)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등에서 사용되는 위험도 그 대상이 수입하는

살아있는 가축, 식물이 주 대상이며 인체 건강 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의 위험성(경제적 손실 등)을 함께 다루고 있어 식품안전 분야의 Risk Assessment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함이 무방하다.

4) 정부 당국은 Risk Assessment와 같은 새로운 특정 용어는 법의 개정을 통해 모법에 정의하여 사용함으로써 조기에 국민에게 법적 용어로 친숙해지도록 노력함이 필요하다. 